

남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31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9. 3. 9.

제 출 자 : 산업건설위원장

1. 심사경위

- 제출일시 및 제출자 : 2009. 1. 23.(남양주시장)
- 회부일자 : 2009. 3. 2.
- 상정일자 : 2009. 3. 9.(제16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- 의결일자 : 2009. 3. 9.(제16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)

2. 제안설명요지 (경제산업국장 김정식)

가. 제안이유

-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이용주체별 권리 책무와 에너지 부문별 시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임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안 제3조에서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였으며
-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에너지 이용주체별 권리와 책무를 정하고

- 조례안 제6조 내지 제10조에서는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
- 조례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에너지 부문별 시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추성운)

- 조례안 제7조 제5항의 조문 중 「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·기획예산과장·회계과장·지역경제과장·건축과장·주택과장·도로건설과장」을 「당연직 위원은 총무기획국장·경제산업국장·도시국장·교통도로국장·지역경제과장」으로 수정하고, 조례안 제15조 제1항의 조문 중 「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」를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「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」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심사 중 논의된 의견

- 총체적인 차원에서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, 조례안 제7조 제5항의 조문 중 「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·기획예산과장·회계과장·지역경제과장·건축과장·주택과장·도로건설과장」을 「당연직 위원은 총무기획국장·경제산업국장·도시국장·교통도로국장·지역경제과장」으로 수정하고, 조례안 제15조 제1항의 조문 중 「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」를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「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」로 수정 가결하였음.

5. 심사결과 : 수정 가결

붙임 : 남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. 끝.

남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31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9. 3. 9.

제출자 : 산업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에너지 이용주체별 권리 책무와 에너지 부문별 시책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정안을 발의,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동 조례안 제7조(위원회 구성) 제5항의 "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·기획예산과장·회계과장·지역경제과장·건축과장·주택과장·도로건설과장" 을 "당연직 위원은 총무기획국장·경제산업국장·도시국장·교통도로국장·지역경제과장" 으로 수정함.

나. 동 조례안 제15조(재정지원 등) 제1항의 "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 체계" 를 "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" 로 수정함.

남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남양주시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7조제5항 중 " 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.기획예산과장.회계과장.지역경제과장.건축과장.주택과장.도로건설과장 " 을 " 당연직 위원은 총무기획국장.경제산업국장.도시국장.교통도로국장.지역경제과장 " 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"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" 를 "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" 로 한다.

수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수 정 안
<p>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④(생략)</p> <p>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, <u>당연직 위원은 총무과장·기획예산과장·회계과장·지역경제과장·건축과장·주택과장·도로건설과장</u>이 되고, 위촉직 위원은 에너지 관련 전문가, 전문기관·협회 또는 시민단체 관계자, 지역주민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⑥ ~ ⑦(생략)</p> <p>1. ~ 4.(생략)</p>	<p>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~ ④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----- -----, <u>당연직 위원은 총무기획국장·경제산업국장·도시국장·교통도로국장·지역경제과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⑥ ~ ⑦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4.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재정지원 등) ①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<u>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</u> 마련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세제·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>제15조(재정지원 등) ① ----- ----- <u>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